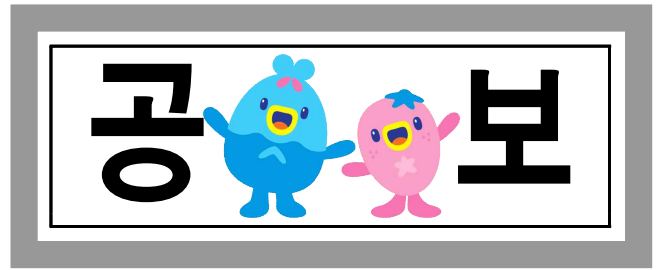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17호 2024년 2월 16일(금)

고 시

- 하천점용허가 고시 2

공 고

- 환매계획공고 3
- 공고 6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16일

속초시장

1. 하천의 명칭		청초천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	성 명	에스케이텔레콤(주)
	주 소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149, 4층
3. 점용의 목적 및 개요	목 적	통신주 설치(2분)
	개 요	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	위 치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1265-120
	면 적	2㎡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		2024. 2. 7.~2028. 12. 31.

환 매 계 획 공 고
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동 500-23번지 일원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“용소골새뜰마을사업” 종료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(소3-41)의 폐지에 따라 당시 협의 취득한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제9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환매권 이행 또는 미 이행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6일

속 초 시 장

1. 사 업 명: 용소골 새뜰마을사업
2. 위 치: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동 500-23번지 일원
3. 시 행 자: 속초시장(미래전략과)
4. 환매대상
 - 토 지: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500-23번지 외 7필지
5. 환매권 행사기간: 2024. 2. 16.~2024. 8. 26.(6개월)
6. 청구장소
 -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미래전략과 도시재생팀(☎033-639-1541, 2807)
7. 환매권의 소멸: 환매권자는 해당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(청구기간 **엄수**).
8. 환매방법 및 절차: 환매권 통지 → 환매청구 → 환매금액 통지(고지서 발부) → 환매협의 및 계약(2024. 8. 26.까지) → 환매금액 납부(고지서상 납기일까지) → 소유권 이전등기

9. 기타사항: 토지의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며,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.

□ 환매대상 목록

일련 번호	재산의표시		지목	지적 (㎡)	환 매 대상자	협의 취득일 (소유권이전)	비 고
	소재지	지번					
1	중앙동	500-18	전	81	박용희	2019. 04. 08.	편입 토지 (중앙동 500-1번지에서 분할)
2	중앙동	500-17	전	47	박용희	2019. 04. 08.	잔여지 (중앙동 500-1번지에서 분할)
3	중앙동	500-23	전	61	안경일	2019. 04. 23.	편입토지 (중앙동 500-15번지에서 분할)
4	중앙동	500-22	전	1	안경일	2019. 04. 23.	잔여지 (중앙동 500-15번지에서 분할)
5	중앙동	503-208	대	1	김남선	2019. 05. 14.	편입토지 (중앙동 503-141번지에서 분할)
6	중앙동	503-191	대	4.667	임재경	2019. 09. 10.	편입토지(편입면적 7중 지분 8/12) (중앙동 503-67번지에서 분할)
7	중앙동	500-21	대	3	김화자	2019. 12. 27.	편입토지 (중앙동 500-3번지에서 분할)
8	중앙동	503-194	대	13	강동현	2020. 05. 28.	편입토지 (중앙동 503-114번지에서 분할)
9	중앙동	503-191	대	1.167	임재호	2023. 08. 28.	편입토지(편입면적 7중 지분 2/12) (중앙동 503-67번지에서 분할)

환매권 (□이행 □미 이행) 협약서
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동 500-23번지 일원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“용소골새뜰마을사업”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(소3-41)에 편입되어 속초시가 협의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폐지에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환매권)에 따라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(□이행 □미 이행)함을 협약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신청인(속초시

번지 前토지소유자)

성 명:

(인)

주민번호:

주 소:

속초시장 귀하

공 고

「속초시 공인 조례」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16일

속 초 시 장

1. 공인 등록 사유

—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과 관리

2. 공인명 및 인영 : 2개

구분	공 인 명	인영	규격	최초사용일	비고
등록	속초시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관인		2.0×2.0cm	2024. 2. 16.	
등록	속초시하수도사업 회전기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2. 16.	